

국 민 안 전 처

징 계 · 주의 요구

제 목 ○○○ 저수지 준설 및 장비임차 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영월군

징계대상자 영월군 ○○○○○과

지방○○○○ ○○○

징 계 종 류 경징계

내 용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르면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등으로 인하여 드는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영월군에서는 2015년 국민안전처로부터 [표1]과 같이 재난안전과 관련된 특별교부세 1억4천9백만원을 교부받아 “가뭄 긴급대책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영월군 “가뭄 긴급대책사업” 특별교부세 사업현황

지구	공사내용	공사기간	도금액	계약방법	비고
영월군 ○○○○○○○	준설사업 장비임차(1차)	2015. 7. 2.~7.13.	34,490	장비임차	
	준설 및 법면보강	2015. 9.24.~11.12.	11,200	수의계약	
	준설작업 장비임차(2차)	2015.12. 2.~2016. 1.12.	131,560	장비임차	
	법면보강	2015.12.16.~2016. 3.14	167,120	관내입찰	

* 자료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자치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르면 응급복구와 관련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아닌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는 2015년 가뭄 긴급대책사업을 추진하면서 2차 사업의 경우 긴급복구 공사가 아님에도, 단일공사를 준설장비 임차 및 법면보강 등 2개의 사업으로 분할하고, ○○○ 등 7명의 관내 장비임대 업자와 준설장비 임차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특혜를 제공하였다.

1. 경쟁입찰 대상이나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시행

강원도 영월군(○○○○과)에서는 가뭄 대책에 따른 ○○○ ○○○ 준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준설사업 1차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재난복구 등의 경우에 해당되어 장비임차계획을 수립¹⁰¹⁾하여 2015.7.2.~7.13.까지 준설사업을 시행하고 임차사업비 34,490천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1차 준설 사업시행 이후 저수지 바닥에서 용천수가 발생하여 작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강우로 가뭄이 해소됨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저수지 가뭄대책 준설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

101) 장비임차 종합시행계획 수립 없이 1차분 사업계획만 수립됨

따라서 위에서 서술한 관련법에 근거하여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 복구가 필요한 요건이 해소 되었으므로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장비임차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그러나, 강원도 영월군은 ○○○ ○○○ 준설과 관련된 나머지 사업을 시행(2015. 12. 2.~2016. 1. 12.) 하면서 [표2]와 같이 관련법을 위반하여 일반경쟁 입찰에 부치지 아니하고 장비임차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장비임대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관련사업(법면보강 공사) 낙찰률 대비 약 22,891천원(131,560-108,669천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표 2] 강원도 영월군 특별교부세 2차 사업비 비교 (단위 : 천원)

지구	공사내용	공사기간	지급(설계) 금액	낙찰률 (%)	낙찰률 적용 금액	비고
영월군 ○○○○○○○	실시설계 상 공사금액(2차)	-	123,040	88.32%	108,669	법면보강공사 낙찰률 적용
	장비 임차 지급 금액(1차)	2015.7.2.~7.13.	34,490	100	34,490	
	장비 임차 지급 금액(2차)	2015.12. 2.~ 2016. 1.12.	131,560	100	131,560	

* 자료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같은 저수지내 사업을 분할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 ○○○ 준설 및 법면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실시설계 과업지시서는 [표2]의 준설작업과 법면보강 공사를 같이 시행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실시설계 납품 과정에서 준설작업과 법면보강 공사를 분할하는 것으로 결과물을 납품 받아 한 저수지내 같은 시기의 사

업을 분할 시행 하도록 하였다.

[표 2] 강원도 영월군 특별교부세 2차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지구	공사내용	공사기간	도금액	낙찰률 (%)	계약방법	비고
영월군 ○○○○○○	준설작업 장비임차	2015.12. 2.~'16. 1.12.	131,560	100	장비임차	
	법면보강	2015.12.16.~'16. 3.14.	167,120	88.32	관내입찰	

* 자료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지방○○○○ ○○○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거나 주장하고 있다.

① 농촌의 중장비업체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휘부 보고 후 장비임차로 시행하였으며, 대가품 극복에 적극행정 추진하였다.

② ○○○ ○○○ 설계검토 당시 공사 발주 시 총소요 사업비는 191,210천 원이었고, 설계검토 당시 예산이 2,826천원 절감되는 것으로 검토 되었다.

(설계검토 현황)

전체 설계금액 : 191,210천원×0.8832 = 168,876천원

장비임차 : 34,490천원(1차)+131,560천원(2차) = 166,050천원

168,876천원-166,050천원=2,826천원

③ 당초 실시설계 검토시 예산부족 이유로 실시설계 납품시 당초 준설물량의 60%만(H=1~1.5m, 7,646 m^3) 반영하여 총사업비가 123,040천원(낙찰률 미 적용)으로 산정되었으며, 실제 장비 임차 작업시에는 15,902 m^3 (H=2.0m) 준설하여 공사로 발주했을 시에는 물량이 추가되어 총사업비가 224,580천원으로 증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 ○○○의 ①부터 ③까지의 답변이나 주장은 각각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의 경우, ○○○ ○○○ 준설공사는 법면보강공사와 단일공사 사업으로 통합발주 되었어야 할 사업이며, 긴급요건이 해소된 공사로써 수의계약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준설부분만을 분할하여 관내 특정 장비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방계약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행정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의 경우, 2015~2016 영농철 가뭄극복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저수지 및 취입보 준설계획(○○○○과-00000, 2015. 00. 0.)에는 설계검토 당시 공사로 발주했을 때와 장비임차로 사업을 시행했을 때의 사업비 비교자료가 없으며, 장비임차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③번 의견에 따르면 60%(H=1.0m, 1.5m) 준설 시 총사업비 123,040천원, 100%(H=2.0m) 준설 시 총사업비는 224,580천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설계검토 당시 비교·검토하였다는 총사업비는 191,210천원은 ③번 의견에서 제시한 총사업비와 차이¹⁰²⁾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산출근거 등이 없어 사업비 비교 검토를 하고 사업 추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설계내역상 반영된 사토거리는 L=7.0km 실제 사토장과의 거리는 약 1.7km인 점을 보았을 때 사업비 비교 검토를 하였더라도 공정한 비교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③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내부결재 문서 등이 없고, 구두로 사업량을 늘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 [준설작업 사진]과 같이 B/H 운전석 부분이

102) 장비 임차의 경우 사업계획(2차분)에는 사업비 115,000천원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확인서 의견란에 제출한 설계검토 현황에는 실제로 장비업체에게 지급한 금액인 131,560으로 표기,
또한, 물량이 증가되었다고 한다면 장비임차일도 증가하게 되어 설계검토상 비교되어야 할 금액은 실제지급액인 131,560천원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비교하여야 했어야 함.

H=2.0m로, 실제 작업사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준설된 부분의 지반고와 원지반의 높이차가 2.0m 이내로 실시설계 당시에 산출된 물량보다 많은 양을 준설했다고 할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징계] 위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